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
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1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.

발 의 자 : 박희승·박용갑·윤준병
김정호·안호영·정성호
백혜련·서미화·김태년
백선희·전진숙·서영교
박홍배·서영석·이원택
이광희·김준혁·최혁진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및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등을 위해서는 각종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성과의 확산과 계승이 필요함.

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5년 5월 기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,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

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, 운영비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유품 관리와 기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등의 범위에 추가하고, 기념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사후에도 지속적인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, 제12조제2항 등).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6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

제12조제2항 중 “사업경비”를 “사업경비 및 운영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2(국가의 의무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의2(국가의 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국가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
제11조(기념사업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(생략)	제11조(기념사업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관리</u> 7. ----- <u>제6호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경비의 보조) ① (생략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<u>사업경비</u> 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③ (생략)	제12조(경비의 보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업경비</u> <u>및 운영비</u> ----- ③ (현행과 같음)